



## 보도참고자료

배 포 일	2021.07.01. / (총 2 매)		
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	과 장	김 한 숙	044-202-3860
	담 당 자	고 윤 권	044-202-3864
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심사제도운영과	과 장	박 동 연	02-2204-0113
	담 당 자	이 미 정	02-2204-1412

### 7.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·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

-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”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.

•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?

자·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**행정입원**,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**응급입원**,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**외래치료명령**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.

더불어,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**조기정신질환 치료**에 대해서도 지원

-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**소득 수준에 따라**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, **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**의 경우에는 **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**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.

\* 보도참고자료 “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·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”(24)

-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“외래치료명령\*” 대상자에 대해서도 **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**되며,

\*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

- **정신질환\*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**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%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**120% 이하 가구**(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'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,000원)까지 **대상자를 확대**하였다.

\* 대상 정신질환은 ‘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F29), 조병 에피소드(F30), 양극성 정동장애(F31), 재발성 우울장애(F33), 지속성 기분장애(F34)’
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·타해 위험으로 인한 **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**에서 환자가 처한 **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**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

- 특히,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**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**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**만성화를 예방**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.

- 이번 확대조치는 **'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**에 대해서도 **적용**하기로 하였으며,

- **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**에 환자, 보호의무자,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(www.ncmh.go.kr)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**주소지 관할 보건소**에 신청하면 된다.
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**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** 정신의료기관 등 **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**를 당부하였다.